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106170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이명희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원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2025. 11.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3.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제품설계 등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재산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기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2023. 4. 23.경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업무용 컴퓨터 1대에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C은 2025. 3. 7.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로부터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저작권교육 조건부)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같은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장소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인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약 9회 실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가 수억 원에 이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인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의 판매가격이 약 4억 7,000만 원이고, 'E'(구독형 3년)의 가격이 6,6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F'의 가격이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 을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듈 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수요자로서는 필요로 하는 모듈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점, ② 실제 피고 회사는 CAM/CAD 프로그램인 G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공급가액에는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무상하자 보수서비스, 기술지원 등의 용역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3)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고, 피고 회사에서 다른 설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면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구입하였을 것인 점, ② 'E'(구독형 3년)의 판매가격이 6,620만 원인 점, ③ 피고 C은 업무용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설치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4.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권민오